

# 농촌주민의 계급구성과 존재양식\*

—전남 장성군 수옥리의 사례—

이                  상                  철\*\*

<차례>	
I. 머리말	4. 사회
1. 문제제기	III. 계급구성
2. 조사지역의 선정과 조사방법	1. 이론적 논의 2. 경험적 검토
II. 조사지역의 개관	IV. 존재양식
1. 지리	1. 노동구조 2. 생활양식
2. 인구	
3. 경제	V. 맷음말

## I. 머리말

### 1.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농자' (農者)는 이제 더 이상 '천하지대본' (天下之大本)이 아니게 되었다. 국민총생산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농업과 농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격감하였으며, 농민은 하류계급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농민층의 계급적 위치와 존재양식을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과 발전단계의 배경 하에서 규명함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농민층은 소상품생산자로서 동질적인 물적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독점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에 의한 농업의 성격규정에 따라 독점자본 대(對) 농민층일반의 관계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중농표준화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농민층 내부의 대립·모순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농민층

\*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준 사회과학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전임강사.

일반의 성격 외에, 그 내부의 계급구성과 각 계급의 존재양식의 상이점도 같이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차적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상업화·자본주의화에 따른 농민층분해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분해는 일차적으로 그 내적 조건인 제계급 간 생산력의 격차에 의하며, 이차적으로는 그 외적 조건인 자본의 농업파악 방식에 의한다. 물론 외적 조건은 내적 조건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지만, 보다 규정적인 힘을 미쳤던 것은 외적 조건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공업화 위주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추진하면서 이 목표에 부합하도록 농업을 재편하여 왔기 때문이다.<sup>(1)</sup> 국가에 의한 농업의 불균등 파악은 곧 자본의 농업파악방식을 결정함으로써 농민층의 계급적 위치와 존재양식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조건을 더불어 고찰함으로써만 농민층의 계급구성, 농민 계계급의 존재양식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규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그 제약조건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농민 계계급의 한국사회 내에서의 계급적 위치를 명백히 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계급연합문제를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다(황한식, 1984b:406; 佐伯尚美, 1976:207-10; 美崎皓, 1979:138-39, 168).

자본주의하에서는 토지가 아니라 자본이 농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힘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일반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농공간 불균등발전과 마찬가지로 농업 제부문간, 농촌 제지역간 불균등발전이 지배적 인 것이다. 따라서 농민층의 계급구성과 존재양식도 부분 및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기초조사라는 의미에서 사례연구를 통하여 계급구성을 명확히 하고, 각 계급의 존재양식을 노동구조 및 생활양식의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조사지역의 선정과 조사방법

연구대상은 자본주의화가 보다 진척된 지역보다는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한 미작위주의 경종농업지대에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상품생산이

(1) 이것은 주를 달 필요가 없을 만큼 일반화된 견해이지만, 국가·경제정책 및 한 국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위치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는 김종덕(1985), 박현체(1981:43-51), 정영일(198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1982), 横井浩(1978), 林偉史(1983), Moore(1984)의 논의가 참고할 만하다.

활발한 원예·축산·과수지대나 기계화된 평야미작지대는 한국농촌 전체로 볼 때 아직까지 지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 2리이다.

84년 10월 말 이틀간 예비조사를 하고, 85년 1월 10일에서 19일까지 마을 내에 거주하면서 현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가구의 가구주를 원칙으로 하여 면접조사로 하였으며,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자료 및 지역주민들의 평가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기간동안 조사자는 관찰자의 입장도 겸지하였다. 조사표는 주요항목만 기재된 비구조화된 것을 사용하여 개방식 질문을 행하였다.

## II. 조사지역의 개관

### 1. 지 리

장성군은 정주시와 광주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장성읍에서 수옥 2리까지는 약 10km 거리로서, 함평행 국도 24번을 이용한 시외버스가 수시로 다닌다. 수옥 2리는 수작·대화·하방의 세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도변에 맞닿아 있는 수옥 1리가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장성군은 노령산맥 말단에 속해 있어서 산악지형에 가깝다. 수옥 2리도 뒤에는 산, 앞에는 큰 내가 있어 글자 그대로 삼계(森溪)면이라는 이름에 어울린다.

〈표 1〉 인 구 구 성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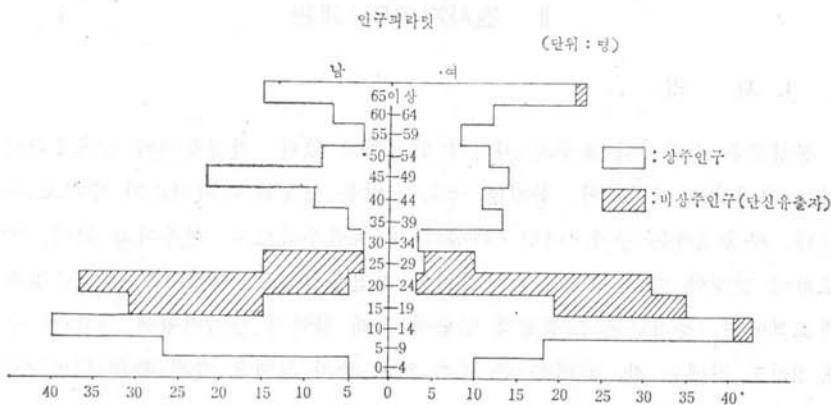
성별 나이	상주인구			비상주인구			성별 나이	상주인구			비상주인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4	5	10	15	—	—	—	40~44	9	11	20	—	—	—
5~9	27	18	45	—	—	—	45~49	22	14	36	—	—	—
10~14	40	41	81	—	2	2	50~54	8	12	20	—	—	—
15~19	15	19	34	16	16	32	55~59	3	8	11	—	—	—
20~24	5	3	8	32	28	60	60~64	7	12	19	—	—	—
25~29	3	4	7	12	6	18	65세 이상	15	22	37	—	1	1
30~34	3	3	6	—	—	—	계	67	190	357	60	53	113
35~39	5	13	18	—	—	—							

## 2. 인구

조사당시의 상주인구는 수각이 43호에 233명, 대화가 21호에 82명, 하방이 12호에 42명, 총 76호에 357명이다. 비상주인구는 49호에 113명이다(〈표 1〉과 〈그림 1〉 참조). 상주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15세부터 45세까지의 청장년층이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년층의 가구유출과 가족계획에 의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급격히 줄어 들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반해 비상주인구(단신유출자)는 15세부터 29세 사이가 압도적이다.

〈그림 1〉 인구피라미

(단위 : 명)



## 3. 경제

수목 2리의 총경지면적은 56.4ha로서 호당 평균 0.75ha이다(낙농가 1호를 제외하고는 농업노동자와 순지주도 포함해서 계산했음). 경지정리는 댐건설시 수몰지구가 될 하방을 제외하고 81년에 수각까지 했다.<sup>(2)</sup> 임야는 많은 편이어서 1구와 합쳐 445ha나 된다. 84년에는 소득개발지구로 선정되어 감나무 재배와 한우사육을 권장받았다. 그외 특용작물로서는 딜기재배가 성행하고 담배재배도 하고 있다.

자연부락별로 보면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수각이 입지조건과 경제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대화, 하방 순이다.

(2) 마을 앞 내를 이용하여 수각 윗쪽에 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실측조사도 84년에 했으며, 댐이 완공되면 하방은 물에 잠기게 된다.

〈표 2〉 겸업 내용

(단위: 호)

1 종	토 건 마을술집 서 당	11 1 1	13	2 종	토 건 공무원(면사무소근무) 마을가게	2 1 1	4
계			17				

재촌상주인구의 가구별 직업구성은 농업전업이 59호, 겸업이 17호이다. 전업 중 1호는 낙농가이다. 겸업은 1종이 13호, 2종이 4호이다<sup>(3)</sup>. 겸업내용을 보면 토건종사가 13호로 압도적이다(〈표 2〉 참조). 마을술집은 집 안에서 막걸리 정도를 팔고, 서당은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 정도이다. 일상생활에서 상권은 4km 떨어진 면소재지나 장성읍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규모가 큰장을 보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광주를 주로 이용한다.

#### 4. 사 회

수옥 2리 주민들의 실제생활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대화와 수각은 거리도 가깝고 수옥 1리(통상 '옥천'이라고 불리운다)의 국도까지 나오는 길목에 있으므로 노동력 교환 등 제반 관계가 밀접한 편이지만 하방은 그렇지 않다.

부락규모 때문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수각과 대화에서 교대로 말고 있다. 그리고 각 부락마다 1명씩 반장이 있으며, 이장이 있는 부락은 이장이 그 부락의 반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장은 제반 행정사항을 각 부락의 반장을 통해서 처리하며, 타 부락의 일에 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세 부락 모두 현재 각성받이 마을이다. 그러나 수각은 6·25 전만 하더라도 삼성받이 마을이었으나 6·25 당시 많은 인구가 유입하여 현재 약 2/3의 주민이 타지 출신이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 유입한 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당시 어느정도 자산을 보유한 자들이였다고 한다.

(3) 겸업적 농가란 '가구원 가운데(3개월 이상 장기출타 가구원 제외) 비농업부문에 연간 30일 이상 취업(또는 종사)하여 농외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는 농가'이며, 1종은 농업소득이 주이고, 2종은 농외소득이 주인 농가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농외소득'은 '재촌상주인구의 농외사업과 농외취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농외소득 개념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양부 외(1983:104-107)을 참조할 것.

통학관계를 보면 국민학교는 국도 맞은 편의 학교를 이용한다. 중학교는 면소재지나 읍을 이용하고, 고등학교부터는 광주를 주로 이용한다.

### III. 계급 구성

#### 1. 이론적 논의

농민층의 계급구성에 대한 논의는 농민층분해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분해란 소생 산자로서의 농민층이 농업에서의 가치법칙의 관철에 따라 자본과 임노동관계, 즉 농업자본가와 농업노동자라는 대립적인 계급관계를 이루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은 농업 내의 생산력 구조와 농외자본의 농업파악방식에 의해서 규정된다. 전자는 분해의 강도를 내적으로 규정하는 바, 토지(규모 및 소유의 성격)·기타 생산 수단(농기계·비료 등) 및 노동력의 요소로 구성된다. 후자는 농업과 비농업 간의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규정하는 바, 농산물가격 수준과 농업자본의 상대적 수익성, 그리고 농외노동시장의 전개정도로 구성된다(이영기, 1984:158-63; 美崎皓, 1979:134-38). 양극분해는 분해과정 전체를 일관하는 기본방향이자 일반적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일제히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제시한 제조건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각국의 역사적인 과정과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 및 단계의 차이에 따라 각기 양상을 달리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진전도와 형태를 갖는 것이다(박진도, 1977; 梅川勉 외, 1974:40-42).

이에 따라 농민층의 계급구성도 결코 획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유형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봉건적 토지소유가 철저히 해체되고 자유로운 토지소유를 확립하여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사회의 계급구성이다. 여기에서는 소농이 문화·분해의 분기점인 바, 대토지 소유자·대농·중농·소농·반프롤레타리아·농업노동자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는 봉건적 토지소유가 타협적으로 해체되고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지연된 사회의 계급구성이다. 여기에서는 중농이 문화·분해의 분기점인 바, 지주·부농·중농·빈농·농업노동자로 구성된다(石渡貞雄, 1970:9-19, 梅川勉 외, 1974:42-44). 한국의 경우는 농지개혁의 성격과 그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sup>(4)</sup> 등 그 역사적·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후자의 유형에 해당된다 (박진도, 1980:89-93; 김완, 1984:175-76). 그래서 일단 지주·부농·중농·빈농·농업노동자의 계급구성을 상정하고<sup>(5)</sup> 그 존재를 검토하기로 한다.

계급구분의 기준은 생산관계에 의한 농촌주민들 사이의 잉여수취관계가 기본이 된다. 그렇지만 계급관계는 농업내부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외자본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규정되므로 유통을 통한 수탈의 형태, 정책과의 관련, 노동력의 유출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佐伯尚美, 1976: 209-10). 따라서 기본적으로 농업·비농업을 불문하고 농가 가족노동력 전체의 관점에서 고용·파용관계로 분석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박진도, 1980:93-94). 그러나 겸업내용이나 비동거가족의 취업상황이 각 농가의 농업경영상황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비동거가족의 재촌가족에 대한 기여는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Ⅳ장 1절의 단신유출을 참조할 것), 농업 내의 제지표만으로도 기본적인 계급구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2절에서 농업 내 제지표로써 계급구분을 하고, 이차적으로 Ⅳ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농외부분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농업 내에서 계급구분의 구체적 지표로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지규모이다. 왜냐하면 경종농업지대에서는 경지규모가 중심이 되어 고용·파용 및 임대차관계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이것과 더불어 농기계 등의 다른 생산수단도 중요지표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이

(4) 농지개혁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① 반봉건적 지주적 토지소유를 타파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김병태, 1982; 유인호, 1979; 장상환, 1985), ② 봉건적 지배의 타협적 해소(황한식, 1977; 이영기, 1984), ③ 소농유지정책(김준보, 1970)이라는 세 견해로 대별된다.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의 농업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차이와 직결되는 바, 재생소작제에 대해서도 ① 과도기적 성격인 소농적 차지농·분익소작제, ② 반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 ③ 자본제적 임대차 관계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이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봉쇄당하여 자본주의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5) 농업부문에서의 계급구성은 계층법주의 단절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농민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이 미분화된 과도기적 계급인 뿐만 아니라 조아지의 한 범주이며, 부농·중농·빈농의 '제계층'으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 농촌주민은 농민 외에도 지주·농업노동자의 계계급을 포함하는 임체적 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농민'은 '제층' 구성, '농촌주민'은 '계급' 및 '제층'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石渡貞雄, 1955:25-33).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사적 범주와 사회학적 범주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주민 일반을 지칭할 때도 '농민(층)'이라는 용어를, 계층을 지칭할 때도 '계급'이라는 용어를 포괄적 의미로 통일해서 사용할 때가 많음을 밝혀둔다.

리한 기초 위에서 비로소 체계급간의 잉여수취관계 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의 고용관계가 잉여가치 취득을 위한 진정한 자본제적인 물질적 조건에 기초한 것인가 라는 점이다(石渡貞雄, 1955:34). 그리고 경지규모도 단순히 그 면적에만 의한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石渡貞雄, 1955:33-42; 南清彦, 1961:26-32). 이러한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별 무리없는 계급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 2. 경험적 검토

체계급의 존재에 대한 검토를 우선 경지규모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왜냐하면 경종농업지대에서는 경지규모가 중심이 되어 생산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 3>의 경지소유규모별 농가구성을 보면 총 75호(중농에 해당하는 낙농가 1호를 잠시 제외시켜 논의함) 중 3,000평 미만이 58호(77%)나 된다. 이 중에서도 1,500평 미만층이 지배적이며, 토지가 전혀 없는 가구도 18호, 전체의 1/4이나 된다.

<표 3> 경지소유규모별 농가구성

단위 규모	호	%
무 토	18	24.0
1,500평 미만	25	33.3
1,500~3,000 //	15	20.0
3,000~4,500 //	11	14.7
4,500~6,000 //	4	5.3
6,000~9,000 //	1	1.3
9,000평 이상	1	1.3
계	75	99.9

<표 4> 경지 경영규모별 농가구성

단위 규모	호	%
무 토	9	12.0
1,500평 미만	18	24.0
1,500~3,000 //	31	41.3
3,000~4,500 //	12	16.0
4,500~6,000 //	3	4.0
6,000~9,000 //	2	2.7
9,000평 이상	—	—
계	75	100.0

<표 4>의 경지경영규모별 농가구성을 보면 소유규모에 비해서 1,500~3,000평층이 지배적이며, 소유규모보다 경영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소작(임차)에 의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평 이상 경영하는 가구는 전혀 없다.

그러면 각 계급의 존재와 그 성격을 차례대로 검토해 보자.

### 가. 지 주

자소작별 농가구성을 보면(<표 5> 참조), <표 3>의 무토지소유자 18호 중

〈표 5〉 자소작별 농가구성

유형① 단 위	순지주	지자작	자작	자소작	소자작	순소작	무토	계
호	1	9	29	13	5	10	8②	75
%	13.3	38.7		37.3			10.7	100.0

주 : ① 유형별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지주 : 전 경지를 임대한 농가

지자작 : 조금이라도 임대지가 있는 농가

자작 : 경작지 모두가 자신의 소유인 농가

자소작 : 경작지 중 소유지의 비율이 임차지의 비율을 초과하는 농가

소자작 : 경작지 중 임차지의 비율이 소유지의 비율을 초과하는 농가

순소작 : 경작지 모두가 임차지인 농가

무토 : 경작지와 소유지가 없는 농가

② 〈표 4〉에서의 무토는 9호가 되는데 〈표 5〉에서는 8호가 되는 까닭은 순지주 1호가 있기 때문이다.

10호가 순소작농인 셈이다. 그리고 어떤 규모로든 소작을 하고 있는 자는 전 가구의 37%가 된다. 이에 반해 지주(임대)가구는 13%가 된다. 그래서 전 농가의 반수가 어떤 형태로든 소작과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어서 아직도 소작이 농촌 내 노동력 착취의 지배적인 한 형태임을 짐작케 한다. 〈표 6〉에서 소작지 비율을 보면 전경지 169,200평 중 51,000평(30%)이다. 그러나 순수한 소작이라고 보기 힘든 위토와 문종토<sup>(6)</sup>를 제외하면 29,600평(17.5 %)에 머문다.

〈표 6〉 마을 전경지의 소유·경영내용

내용 단위	자경	임 대			계
		재촌지주	부재지주	위토· 문종토	
평	118,200 (56)	22,500* 19,700 (10)	9,900 (8)	21,400 (17)	172,000* 169,200
%	69.9	11.6	5.9	12.6	100.0

주 : ① ( )은 건수

② \*은 대화에서 수우 1리로 임대한 면적을 합산한 것.

(6) 마을에서 통용되는 지대형태와 소작료율을 보면, 위토와 문종토의 경우엔 마지기(200평)당 벼 1섬 이하를 수확 직후에 납부한다. 그나마 대부분은 형식상 납부하고 있으며, 몇십년씩 경작을 하면서 간접도 받지 않고 있다. 즉 법적 소유가 아니어서 매매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소유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일반적인 소작관계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표 7〉 소작조건

조건	기 간		최초임대시기		소작료율		지대형태	자불시기	계약방법
	1년	부정기	1년전	5년이전	정조법 (선자)	타조법 (분자)			
전수	2	8	2	8	1	9	현물지대	수확직후	구 두

그렇다면 지주계급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좀더 자세한 상황을 지주의 성격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자. 우선 재촌지주 10호의 성격부터 보기로 하자. 소작조건에서(〈표 7〉 참조) 기간은 일정하게 정하지 않은 것이 지배적이다. 임대시기도 관례적으로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고, 소작료율은 50%로서 수확 직후 현물로 납부하는 타조법이 지배적이다.<sup>(7)</sup> 계약은 모두 구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대형태와 소작료율에서는 반봉건성과 부붙임여노동(不拂剩餘勞動)을 착취하는 기생성이 두드러지나, 지주가 실제로 경영을 강화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를 보면 소작인이 3전은 일가친척이어서 온정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지주의 성격을 보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경지의 소유·경영·임대규모, 가족노동력, 직업, 농지소유목적을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표 8〉을

〈표 8〉 지주의 소유·자경·임대규모 (단위: 백평)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소 유	32	36	22	56	180	8	8	54	34	46	476
자 경	14	28	12	50	60	1	0	42	18	26	251
임 대	18	8	10	6	120	7	8	12	16	20	225

(7) 마을에서 '선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조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대는 마지막 벼 1심 정도이고, 장기계약이어서 조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분작은 반타작이라고도 불리우는 데 소작료율 50%의 현물지대인 타조법을 뜻하며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수를 판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경작권을 파는 것으로서, 임차자 임의로 무엇이든 경작할 수 있다. 그래서 땅기 등 상업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대도 가장 높아서 마지막 벼 2~3심 정도나 된다. 그러나 임차자로서는 임대자의 간섭도 없고 본인의 능력과 의욕대로 경영이 가능하며, 임대자로서는 지대가 높으므로 10여년 전부터 생멸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수를 판다'는 임대차 내용은, 전국적으로는 '선자' 혹은 '선대'라고 불리우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차지경영의 성격이 엿보이는 형태이다(경향신문, 85.5.21). 조사대상지에서는 이 경우가 아닌 정조법의 경우를 '선자'라고 부르는 것이 상이하다.

보면 ③⑥⑦은 영세지주로서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가구이다. 나머지는 소유규모가 마을의 평균이상이 되지만 ④⑤⑨를 제외하고는 노동력이 열악한(노령화·여성화된) 가구이다. 이에 반해 ④⑤⑨는 장년층이지만 ④는 가구주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전소유지를 경작하기 힘든 경우이고, ⑨는 공무원이어서 노동력이 부족한 셈이다. ⑤의 이씨는 마을에서 최대소유자이자 주인인데 가족노동력과 일고로써 경영 가능한 규모 외에는 소작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싼 노임을 주고 얻기 힘든 일손으로 어렵게 농사를 지어보아야 힘만 들 뿐 별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작을 주는 편이 경영에 따른 수고도 덜고 훨씬 유리하다.”<sup>(8)</sup> 사실 이씨를 제외한 이들의 평균 소유·자경·임대면적은 각각 3,290평, 2,120평, 1,170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소작을 통하여 충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을 보면 농업전업이 8호이고, 목공과 공무원이 각각 1호이다. ⑥의 목공 유씨는 조금 밖에 되지 않는 토지는 형수에게 맡기고 자신은 목수일에 전념하고 있다.

지주들의 농지소유목적은 시골에서 살기 위해서와, 자녀들이 출타한 경우에 재산으로서 소유한 경우가 지배적이고 이씨만 재산증식이 목적이다. 요컨대 이씨의 경우 외에는 사실상 지주의 성격을 갖는 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재촌지주들의 경우, 소작조건에서 부불잉여노동에 기생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외의 점에서는 반봉건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재촌지주들에게 계급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이 없을 때 지주계급이 마을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토·문종토를 제외한 부채지주는 총 여덟 경우이다. 소작조건을 보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최초 임대시기도 모두 4년이 넘었다. 예외적인 경우의 오씨는, 부모가 연로하여 1년 남짓 귀향해서 살다가 부모가 사망하자 재상경하였다. 이 토지를 소작하는 주씨는 타지에서 84년에 이주해 온 무토지소유자로서, 지주 오씨가 아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해에 1년간 문서계약을 한 것이다. 기타 소작료율을

(8) 잉여노동 전유의 특정 방법으로서의 소작이, 자본제하에서도 존속하고 지주에게 선호되는 근거를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서는 Pearce(1983)와 김춘동(1983b:168-69)을 참조할 것.

보면 여덟 경우 중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50%의 현물지대이다. 요컨대 재촌지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불잉여노동에의 기생성이 소작조건에서 나타난다.

소작인과의 관계를 보면 3건은 일가친척이고, 2건은 먼친척이며, 나머지는 타인인 경우이다. 지주의 거주지는 장성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전주·서울 등지이며, 직업은 공무원·상업 등 다양하다. 이들 부채지주가 임대한 총경지면적은 9,900평으로서 수록 2리 전경지의 5.9%에 지나지 않는다. 더 구나 평균 임대면적은 1,240평 밖에 되지 않는 영세부채지주이다. 이점은 이들이 소작을 준 동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6건은 타지로 이주시 매각하지 않고 소작을 준 경우이다. 1건은 위토와 달려있는 것이고, 나머지 1건은 읍내에 거주하는 사돈이 지원하는 경우이다. 즉 투자대상으로서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제반 성격을 감안할 때 소작조건의 기생성에도 불구하고 계급으로서의 부채지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주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나. 부 농

부농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빌리며 스스로 노동하기도 하지만, 우량한 생산용구와 유동자본으로써 고용노동에 의한 임여를 얻어 생활해 나가는 존재이다. 즉 농기계를 보유하고 사용하면서 고용노동에의 비중도 상당한 바, 일반적으로 경영규모가 2ha 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을에서 2ha 이상 소유·경영하는 자는 김씨와 지주인 이씨 둘이다. 김씨는 8,400평을 소유하며 모두 스스로 경영하고 있다. 그는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부노동력을 기간으로 작업하며 부족한 노동력은 일고로써 해결한다. 기계화에 의하지 않고 부부 2인이 영농 가능한 규모는 10~15 마지기이므로(마을주민들의 평가에 따름) 고용노동의 비중이 과반수인 셈이다. 그러나 그는 “농사는 힘만 들고 남는 것이 없으므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 그대신 자녀를 통한 도시에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영(확대)의사를 갖는 준(準)자본가적 성격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지주인 이씨는 경운기·탈곡기·이앙기 등 상당한 농기계를 보유·사용하면서 부부노동력을 기간으로 6,000평을 경영한다. 그리고 도 부족한 노동력은 일고로써 해결하며, 12,000평은 소작을 주고 있다. 즉

고용을 통한 수탈보다 소작을 통한 기생의 비중이 더 큰 경우이다. 그는 임대계약도 매년 갱신하는 등 소작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계화·경영확대를 통한 부농·자본가로의 길은 희박하고, 지주화 혹은 경영축소의 길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결국 수옥 2리에서는 상향분해가 제약되고 있는 셈이다.

#### 다. 중 농

중농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일부는 빌리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고용되지도 않고 타인을 고용하지도 않는 존재이다. 즉 자신의 토지와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1ha 이상 2ha 미만을 경영하는 농가가 일단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이들은 농번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품앗이에 의해서 주로 해결하지만 일고에 의존할 때도 많다. 그 까닭은 이 마을의 기계화율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sup>(11)</sup>

이들의 소유·경영규모의 변동상황을 보면 소유규모보다 경영규모를 확대한 농가가 5호, 축소한 농가가 6호이다. 전자의 경우 중 3호는 소유규모가 3,000평 이상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토 등을 조금 소작하는 경우이고, 2호는 소유규모가 1,400평씩 밖에 되지 않지만 양호한 기계화를 바탕으로 2,800평, 2,600평씩 소작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농기계를 이용하려면 기계를 소유할 수 있는 경제력보다는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노동력과 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점에서 이들은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영규모를 축소한 농가는 보유노동력에 비해서 소유규모가 과대하며, 기계화로 대체하지도 못하고 소작을 준 경우이다. 이 중 4호는 경영규모가 3,000평 미만이지만 고용관행·소유규

(9) 미작지대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는 방식은 ① 부족한 노동력분(分) 만큼 소작을 주는 것과, ② 기계화에 의한 대체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①의 경우는 주로 전형적 농촌에서(김완, 1984:186-87; 이경환, 1983a,b), ②의 경우는 평야지대에서(오명석, 1983; 조영탁, 1985)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0) 중농은 가족노동력으로 경영가능한 규모의 경지에서 생산된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비 충족이 되는 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경지면적에서의 하한기준은 약 1ha 정도이다(이영기, 1984:140-41; 김완, 1984:176-78).

(11) 이들은 “인력으로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기계사용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계가 너무 고가이며 다루기 힘들고 골병만 들뿐 남는 게 없다”고 기피한다. 즉 기계화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기계화의 한계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웃마을에 전화만 하면 현금 수입을 얻을려고 즉시 와서 해주기 때문에 굳이 농기계를 소유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기계화율이 낮다.

모·임대면적·가족상황·생활상태 등으로 파악할 때 중농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규모는 3,000평 이상이지만 그 대부분을 소작하고 있는 농가들은 빈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낙농가까지 포함하면 마을의 중농은 총 18호가 된다.

중농의 농업경영 특성을 보면 겸업 2인 외에는 모두 농업전업이다. 마을의 이용가능한 경운기 6대 중 5대가 이들의 소유임에서 드러나듯이 대부분의 기계화는 이들이 담당하며 노동력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물론 때로는 품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만, 이것이 수입이나 잉여노동 수탈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웃간의 상호부조와 부족한 가족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의 농업경영은 부부 중심의 가족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적정수준의 경영규모에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라. 빈 농

빈농은 일부분의 토지와 불완전한 생산용구를 갖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고용당하는 존재이다. 즉 1ha 미만을 경영하며 노동력의 판매 비율이 높은 농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3,000평 미만을 경영하는 농가는 총 49호로서 전 농가의 64%나 된다.

이들 중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000평 이상 농가는 부부 중심으로 경영하며 농번기에는 주로 품앗이에 의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한다(이들을 빈농상층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규모가 보다 작은 농가는 대부분 품을 팔아서 가계를 보충하고 있다(이들을 빈농하층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자 중에도 가족노동력이 열악한 자는 오히려 일고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예 소작을 주어 경영규모를 축소한 영세재촌지주도 3호나 된다(<표 8> 참조). 기타 소유·경영규모 및 가족상황, 생활상태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면 실제 빈농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농가는 48호가 된다.

이와 같이 빈농 중 일부는 소작을 주어 보유노동력으로 경영 가능한 수준 까지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작을 얻어 오히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조금의 토지라도 임차를 하는 자 총수 28호 중 빈농인 경우가 23호(82%)나 된다.

요컨대 빈농은 품을 팔거나 소작을 함으로써 경영규모 및 수입의 확대를 도모한다. 그러나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겸업, 혹은 소작을 주

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전업(轉業)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sup>(12)</sup> 이들은 경영 규모 증대 및 탈농화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마. 농업노동자

농업노동자는 자신의 토지와 생산용구가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는 것에 의해서 생활하는 존재이다. <표 4>의 무토농가 9호 중 순지주인 주○애씨를 빙농에 속한다고 간주하고, 2종 경업농가 중 전업적으로 토건에 종사하는 이○윤씨와 100평만 자경하는 <표 8>의 ⑥번 유씨를 비농업노동자로 보면, 농업노동자 가구는 총 6호가 된다.

이들은 전혀 토지를 소유·경영하고 있지 않고 주로 노동력을 팔아 생활해 나간다. 사실 “조금이라도 (생산용구 등 자본이 :필자) 있는 사람은 소작기회가 꽤 있지만 아주 없는 사람은 소작기회가 드물다. 왜냐하면 영농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작을 얻고 싶어도 얻기 힘들고, 줄려는 자도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농업고용 기회가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농업자본가가 존재하지 않고 부농경영화의 길도 희박하여 고용기회가 미발달한 이 마을에서, 이들은 주로 중농에게 농번기에 일고 형태로 고용되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연 6개월 이상 고용되지는 못하며 대부분 100일 이하 고용되고 있다. 더구나 농업기계화 등으로 인하여 농번기에 마저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다(이우재, 1984:29). 왜냐하면 고용자 측에서 보면, “손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것이 같은 삐이라고 시간단축이 되고 잔 뒷바라지가 없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농업 외에 다른 고용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여성으로서, 연로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이농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결여되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농업노동 수입에 의존한다(오명석, 1983: 114). 따라서 이들은 결코 자본주의적 임노동자는 아니다. 다만 도시산업부문에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보다 수월한 농촌에 퇴적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이들의 비동거가족은 대부분 도시에서 임노동을 하고 있으나 가족임금(family wage)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중 일부가

(12) 경업 혹은 전업시도에 대해서는 Ⅳ장 1절 출가노동과 이문구(1981:201)을 참조하라. 빙농의 임노동이 단순히 농업노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산업부문에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러시아의 고전적 상황과 다르다

〈표 9〉 계 급 구 성

구 분	단 위	호 수	%	구 분	단 위	호 수	%
부 농		2	2.6	노 동 자		8	10.5
중 농		18	23.7				
빈 농		48	63.2	계		76	100.0

주 : 노동자 8호는 비농업노동자인 이○윤씨와 유씨를 포함한 수치임.

농촌에 잔류하게 된 경우가 많다.<sup>(13)</sup> 결국 이들도 도시거주 비동거가족이 조금이라도 기반을 잡으면 이농할 상황에 있다. 즉 조만간 탈농화될 범주인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수록 2리의 계급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참조).

첫째, 저농산물 가격이 지주존립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서 지주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부농의 경영확대는 희박하여 상향분해가 제약되고 있다.

세째, 중농과 빈농, 특히 빈농 중심의 구성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농가의 빈곤(과소소비)을 의미한다. 중농의 경영규모는 가족노동력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빈농은 경영규모 확대와 탈농·겸업화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네째, 노동자도 상당수 되지만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임노동자는 결코 아니다. 단지 농촌에 퇴적된 존재로서 조만간 탈농화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상향분해의 제약과 하강분해의 지속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독점자본의 농업파악방식에서 유래한다.

#### IV. 존재 양식

##### 1. 노동구조

앞에서 고찰한 농촌주민의 계급구성과 관련하여 이제 이들의 존재양식을 노동구조와 생활양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농업외부와 연관된 노동력 이동을 살펴보고, 다음에 이것이 농업노동력의 내부구성에 미친 영

(13) 메이야쑤(Meillassoux)는 이 절을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임금과 간접임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도시산업부문이 노동자에게 직접임금만 지불하고 간접임금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981:99-103).

향을 검토한 후, 생활양식은 2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가. 노동력 이동

농촌농업부문이 외부, 즉 도시산업부문과 맺는 관계는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노동력 이동은 이농과 가족분산을 통한 분화·분해를 의미하는 바, 현실적으로 가구유출·단신유출·출가노동·귀환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1) 가구유출

산업화에 따른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조사대상지에서도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하방의 경우를 예로 들면, 농가호수가 64년에는 32호, 70년에는 23호, 현재는 12호로 감소하였다. 대화와 수각의 경우에는 작년(84년)에도 4건의 농가유출이 있었다. 이들은 각각 이농의 전형적 유형들을 대표하고 있다.

홍씨는 친척과의 연줄망을 통해 농업보다 장래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찾아서 이농한 빈농상층인 바, 이제는 어느 정도 고비를 지났다고 생각되는 정상적 노동력 소유자의 유출유형이다. 김씨는 소작만 했는데, 전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서울의 아들이 모시고 간 경우이다. 일차로 자녀세대가 단독유출을 하였다가, 부모가 연로하게 되자 이차로 부모세대가 이촌함으로써 전가족 이동이 완결되는 2단계 이동유형이다. 이 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현재 노부모와 연소한 자식 혹은 손자들만 거주하는 대부분 농가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선은 빈농이나 노동자 가구가 먼저 유출되고 중농이상은 좀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도시에서 어느정도 기반만 잡혀지면 농촌에서의 기반이 취약한 부모세대가 이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농촌에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진 부모세대가 쉽사리 이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녀 중 한 명이 귀향하여 농사일을 뒤이을 수도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부재지주 오씨는, 부모가 연로하기 때문에 귀향해서 1년 남짓 거주하다가 부모가 사망하자 경지 1,000평 모두를 소작주고 재상경한 유형이다. 나씨는 마을의 유일한 가게를 경영하다가 빚에 쪼들려 야간에 도주한 유형이다.

요컨대 주로 빈농 이하의 층이 농촌에서의 생활기반 취약으로 인하여 가구유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創持私雄, 1983: 8-9).

가구유출에 비해 그 규모가 적으나마 가구유입도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4건의 유입이 있었는데 도시로부터의 유입은 전혀 없고 다른 농촌으로부터의 유입뿐이었다. 이들은 모두 빙털터리로 와서 농업노동과 소작을 하면서 열망해 나가는데, 원주민들과의 동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정상적인 부부 2인의 노동력을 보유한 경우는 희소하고 환자들이 많다. 즉 이들은 농촌의 최하층으로서 타지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서의 생활은 더욱 곤란하여, 일가친척에게 의지하거나 좀더 품을 팔기가 좋은 곳을 찾아 유입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4)</sup> 이처럼 농촌내의 가구유입에서도 도시에 비해서 농업노동력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단신유출

경영단위로서의 농가는 잔존하면서 가족 중 일부만 이동하는 단신유출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미혼가족 중 단신유출자가 있는 가구는 49호로서 전체의 64.5%나 되며 모든 계급에 걸고루 속해 있다.<sup>(15)</sup>

〈표 1〉을 보면 단신유출자(비상주인구)는 113명으로서 총인구의 약 1/3 규모가 되며, 유출자 가구당 평균 2.3명에 이른다. 성비(性比)는 113.2로서 남성이 조금 높지만, 군복무 9명을 제외하면 남녀간 큰 차이는 없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5세부터 24세까지가 8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단신유출자의 학력분포 (단위: 명)

학력	남	여	계	%
국 졸 이 하	6	3	9	8.0
중 졸 이 하	22	23	45	39.8
고 졸 이 하	22	23	45	39.8
대 입 이 상	10	4	14	12.4
계	60	53	113	100.0

(14) 이와 같이 유출가구 수와 유입가구 수의 차이 때문에 자연폐가가 증대하고 있다. 현재 그 수는 11호이다.

(15) 단신유출자 중 기혼 비동거가족은 고등학교 3학년인 손자의 육식을 돋기 위해 광주에서 기거를 같이하는 할머니의 경우뿐이다.

그런데 단신유출 후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도 단신유출의 성격분석에 포함시켜야 마땅하지만, 따로 가족을 형성하였다는 점과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신유출자의 학력은 중입 이상 고졸 이하가 80%로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0〉 참조). 대입 이상도 12%나 되어 재촌동거가족의 학력<sup>(16)</sup>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것은 바로 학력이 높은 젊은 노동력이 유출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급에 따른 학력의 차이는 대학에 있어서 단연 두드러진다. 26%에 지나지 않는 부농·중농 가구가 대입이상 자녀수에 있어서는 79%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중농인 이○옥씨는 동생과 딸을 서울의 대학에 진학시키고, 다른 딸과 아들을 광주의 전문대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중농인 배씨는 아들 둘은 광주의 고등학교 및 재수를 시키고 있으나, 두 딸은 중졸 후 서울에서 여공생활을 시키면서 이들에게서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다. 노동자인 고씨는 큰아들은 고등학교까지 시켰으나, 둘째·세째 아들은 가산이 기울어져서 국민학교만 시켰다. 이와 같이 계급과 성별간에 교육기회가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유출자의 이주시기도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부분 중졸·고졸 후에 바로 이주를 하며, 졸업 후 상당한 기간을 농촌에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출자의 직업구성을 통한 이동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11-1〉 참조), 생산직과 학생이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전자는 가계보충·생계비부담 분산 또는 생업개척의 의미가, 후자는 상승이동의 한 통로로서의 의미가

〈표 11-1〉 단신유출자의 직업구성과 직업이동(성별) (단위: 명)

범위 직업	수 익 2 리			수각(현재)			수각(유출당시)			
	남	여	계	%	남	여	계	남	여	계
자영업	4	—	4	3.5	2	—	2	—	—	—
사무직	1	8	9	8.0	1	5	6	—	2	2
생산직	19	29	48	42.5	11	18	29	11	18	29
판매·서비스직	11	—	11	9.7	6	—	6	6	—	6
학생	12	12	24	21.2	10	12	22	19	18	37
군인	9	—	9	8.0	4	—	4	—	—	—
실업	4	4	8	7.1	3	4	7	1	1	2
계	60	53	113	100.0	37	39	76	37	39	76

(16) 재촌 가구주의 경우엔 60대 이상은 거의 무학이며, 40대·50대의 경우에는 6명의 중졸·고졸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졸이하이다. 부인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도 더 낫다.

강하다. 그런데 생산직과 사무직은 여성의 비율이, 자영업과 판매·서비스 직은 남성의 비율이 높다. 규모가 가장 크고 내부구성이 다양한 수각의 경우를 통해서 유출 당시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을 비교해 보면 위의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생산직과 학생의 비율이 유출 당시엔 더욱 높고 직업구성도 보다 단순하다. 이것은 진학이나, 졸업직후 생산직에의 취업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유출의 기본적인 개인적 동기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는 졸업에 따라 학생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자영업·사무직·군인 등의 비중이 높아져서, 직업구성이 다양해지는 것과 조금의 상승이동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직의 양적 변화가 없음은 생산직에서는 상승이동이나 직업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11-2〉 단신유출자의 직업구성(계급별) (단위: 명)

직업	계급	부농·중농	빈농	노동자	계
자영업		2	2	—	4
사무직		6	3	—	9
생산직		7	33	8	48
판매·서비스직		3	8	—	11
학생		15	9	—	24
군인		4	4	1	9
실업		3	2	3	8
계		40	61	12	113

계급에 따른 직업구성을 보면 (〈표 11-2〉 참조) 중농 이상에서는 학생의 비중이, 빈농 이하에서는 생산직의 비중이 압도적임이 드러난다. 또 사무직과 학생에서는 중농 이상이, 생산직에서는 빈농 이하의 비중이 높다. 노동자계급은 군복무를 제외하면 전적으로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위의 여러 점에서 정상적 노동력 소유자의 가구유출이 전환점을 지난 현재, 신규학교졸업자의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단신유출이 농촌에서 도시산업부문에 공급하는 노동력의 주된 유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중농 이상에서는 진학을 통한 상승이동의 통로로서, 빈농 이하에서는 가계보충과 생계비부담분산으로서의 단신유출 경향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함도 알 수 있다 (倉持和雄, 1983:10).

〈표 12〉 단신유출자와 본가와의 경제적 관계(수각의 경우) (단위: 호)

형태 계급 만원/년	유출(본가→유출자)					유입(본가←유출자)				
	부농	중농	빈농	노동자	계	부농	중농	빈농	노동자	계
0	—	2	6	1	9	2	7	9	—	18
0~5 미만	—	—	—	—	—	—	1	5	1	7
5~10 "	—	1	1	—	2	—	1	1	—	2
10~20 "	—	—	3	—	3	—	—	—	—	—
20~30 "	—	—	1	—	1	—	—	2	—	2
30~50 "	1	1	3	—	5	—	—	1	—	1
50~100 "	—	1	1	—	2	—	—	—	—	—
100~150 "	—	—	3	—	3	—	1	1	—	2
150~250 "	—	1	1	—	2	—	—	—	—	—
250 이상	1	4	—	—	5	—	—	—	—	—
계	2	10	19	1	32	2	10	19	1	32

단신유출자와 농촌의 본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수각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자. 〈표 12〉는 자본의 유출입 정도를 계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현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유출입과 합산하였다. 총 32호 중 본가에서의 자본유출이 전혀 없는 경우가 9호이고, 유입이 없는 경우가 18호이다. 유출은 5만 원에서 250만원이상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유입은 5만원 미만에 집중된 바, 한 눈에 농촌에서 도시로 자본이 이전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향도 계급간에 차이가 있다. 부농의 경우에는 30~50만원과 250만원 이상 유출이 있지만 유입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경우 유출은 전혀 없으나 유입은 조금 있다. 즉 상층일수록 유입보다 유출의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본유출의 형태는 현금유출과 식량유출이 주종을 이룬다. 현금은 교육비·사업자금·생활비 등의 용도이다. 이것도 상층일수록 교육비·사업자금·정착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유입형태는 영농비 4건, 계돈 1건, 합계 5건만 20만원 이상의 현금유입이고, 나머지는 모두 명절 등의 귀향시 옷가지를 가져오거나 동생 용돈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뿐만 아니라 형태상에서도 유출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유입이 본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반해 본가에서 유출자에게는 상층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미혼가구원의 유출은 유

출 당시까지의 노동력 재생산비뿐만 아니라 유출 후까지 직접적인 차본이 전을 초래하고 있다.

농가 비동거가족의 도시 산업부문에서의 고용관계는 이론적으로 계급구성의 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신유출자의 학력·이주시기·직업·본가와의 경제적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유출자의 취업관계가 농가 계급구성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농가의 계급적 위치가 단신유출자를 통해서 도시 산업부문과 연관을 가지면서 재생산되는 것이 더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춘동, 1983b:171).

마지막으로 단신유출자의 현거주지를 살펴보자. 군복무를 제외하면 도시거주가 102명으로 압도적이다. 농촌거주 2명도 인근 고등학교와 장성읍내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도시거주자들은 대개 서울과 광주에 거주하며(86%), 기타 도시(주로 인천·부천·마산)가 조금 있을 뿐(14%), 광주 외 전라도 내

〈표 13〉 단신유출자의 현거주지

장 소	서 울	광 주	전 라 도 내 도 시 동	전 라 도 내 총	기타도시	기타농촌	군복무	계
명	57	31	—	2	14	—	9	113

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것은 전라도 내의 산업성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서 취업기회가 희소함을 반영하는 것이다(황한식, 1985: 143-48).

직업구성과 현거주지를 연관시켜보면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에는 생산적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학생이다. 광주에는 학생,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순이다. 기타 도시에는 생산적이 주를 이루며 그 절대수에 있어서도 광주보다 많다. 결국 광주로 진학 또는 취업을 하였다가, 출업을 하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서울 등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거주지에서도 대도시, 산업지대에 편중되어 노동력이 유출됨을 알 수 있다.

### 3) 출가노동

재촌동거가족의 노동력 이동은 모두 장년층 가구주의 출가노동(出稼勞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유출과 단신유출이 농촌노동력의 도시로의 영구적인 이동을 의미한다면, 출가노동은 일시적 이동인 겹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sup>(17)</sup>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잉노동력이 상품화되는 한 형태인데(大川健嗣, 1974:12),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유지가 힘든 빈농하층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현재 총 13명 중 한 명만 예외적으로 중농이다.<sup>(18)</sup> 이들은 대부분 소작도 하고 품도 팔고 있지만,<sup>(19)</sup> 그 수입이 미미하여 출가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농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주로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동안 출가노동을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일거리가 없으므로 통상 연간 3개월 이하 출가노동을 한다.

이에 반해 전업적으로 출가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Ⅲ장 2절 마항 참조). 이○윤씨는 78년에 소작을, 83년에는 농업일고까지 중지하고 아예 출가노동만 한다. 유씨도 4마지기 토지 대부분을 소작주고 출가노동만 한다. 그래서 이들은 겨울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책자에서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촌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고정된 일거리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출가노동 수입만으로는 일가족 생활비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민진, 1985:203). 즉 가족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인들도 농업일고를 통하여 가계를 보탠다.

출가노동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실내장치 목공과 미장이를 제외한 11명 전원이 토건에서 목공일에 종사하고 있다. 결국 13명 전원이 토건에 관여하는 셈이다. 이것은 가장 경력이 많은 이○윤씨가 목공이어서 그의 영향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sup>(20)</sup>

(17) 출가노동은 기간이 정기적·회귀적인 일시적 이동으로서 주로 계절적 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기적 이동이나 계절적 이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Meillassoux, 1981:110) 엄밀한 의미에서 반드시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원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취업하고 취로기간 경과 후에는 원거주지에 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大川健嗣, 1974:11).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6개월 이상 출가하는 두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18) 중농인 김○호씨는 젊어서 배운 기술을 썩히기가 아까워 출가노동을 하는 것 이지 결코 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출가노동(실내장치 목공일)에서 얻는 수입은 연간 60만원 정도이고, 이 때문에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일고로써 보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55만원에 이른다.

(19) 이들의 자경면적은 평균 990평이고, 소작지를 포함해도 평균 1,310평에 지나지 않는다.

(20) 제조업부문에서는 미혼청소년의 노동력이 선호되고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을 저임금을 견디고, 학력이 높아 기술습득이 용이하며, 시간관념이 투철하고, 기계적인 일에 참을성이 있으며, 규율에 순종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토건부문에서는 청장년들이 선호되고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본

이들이 일을 얻는 방식과 임금도 일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미장이인 이○춘씨는 광주의 청부업자(하청업자)가 필요하면 전화를 하며, 일당 13,000~14,000원을 받는다. 84년에는 4~5개월 가량 일을 했는데 수입은 100만원이 조금 넘었다. 실내장치 목공인 김씨는 인근 군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 오거나, 마을 내 목공들의 소개로 일을 한다. 이○관씨는 보일러 공이었으나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는 동생과 같이 이 일에 종사하며 연락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이○윤씨의 연락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윤씨는 동생이 대전에서 토건에 종사하기 때문에 동생과 마을사람들과의 중간 연락을 맡고 있다. 다만 경력이 오래되고 전업적으로 하는 유씨만은 현장에서 사귄 사람들과 때때로 연락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노임을 숙련도에 따라 일당 8,000~14,000원까지 받고 있다. 우천시 등을 제외하면 한달 평균 20~25일 가량 일을 하므로 월수입은 160,000~350,000원 정도가 된다. 숙식은 공사장에서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이 일이나마 더 많기를 희망하며, 전국고속도로·간척·댐·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에도 자신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자부심도 갖고 있다.

요컨대 출가노동은 빈농하층이 중심이 되어 가구주의 토건종사로 나타난다. 이것은 농촌에서는 양질의 노동력이 도시산업부문으로 유출됨을, 도시산업부문에서는 초과이윤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용형태와 노동과정에서 전자본제적 성격을 유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1)</sup>

#### 4) 귀환이동

농촌의 노동력이 계속 유출되는 가운데서 귀환이동도 지속되고 있다. 그 수는 가구의 귀환보다 단신귀환이 훨씬 많다. 귀환이동은 계급간 격차가 없이 일어나지만 최초 유출동기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가구주의 경우를 보면, 중농 이상은 전업(轉業)을 시도하기 위해서, 빈농 이하는 농업수입만으

---

제적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도 세며,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층에서도 임금이 조금 더 많고, 학력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는 사람들(십장과 조원들)끼리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적합한 것이다. 즉 성별·연령별·학력별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김형기, 1984:226-31, 245-48; 정동익, 1985:99-103; 황한식, 1985:138-43). 수육 2리의 특성도 이 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21) 이러한 기제에 대해서는 생산양식 접합이론, 특히 프랑스 경제인류학자들(Meillassoux, Terray, Rey 등)의 설명이 참조할 만하다.

로는 가계유지가 힘들다는 것이 동기이다. 미혼가구원의 경우엔 취업·학업·군복무가 주된 동기이다(단신유출의 논의 참조).

이들이 귀환한 이유도 역시 상이하게 나타난다. 가구주의 경우엔 중농 이상은 사업실패가, 빈농 이하는 수입저조·책지생활난·병·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등이 주된 이유이다. 미혼가구원의 경우엔 실직·제대후 미취업·결혼준비·병·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및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등이 주된 이유이다(윤여덕 외, 1983:77-78). 이와 같이 가구주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귀환의 성격을 갖지만, 미혼가구원의 경우에는 일시적 귀환의 성격이 강하다.

요컨대 귀환이동은 부모를 모시거나 농사를 짓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산업부문에서 축출됨이 기본원인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축적 반발국면의 현상인 바, 도시 산업부문의 부적격자가 자본주의의 야전병원인 농촌에 돌아와서 상대적 과잉인구로 기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美崎皓, 1979:158, 166-68). 즉 농촌이 도시의 사회보장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 산업부문의 저임금유지에 기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Meillassoux, 1981).

지금까지 농업노동력이 도시 산업부문으로 급속히 유출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형태는 가구유출·단신유출·출가노동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축출될 때 귀환이동으로도 귀결된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력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농민과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기반의 동일성과 공통이해를 만드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양질의 노동력이 유출되고 열악한 노동력이 농촌에 체류함은 농업노동력의 내부구성 및 동원유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나. 노동력의 내부구성 및 동원유형

##### 1) 내부구성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업노동력의 절대수 감소 및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의 집중적인 유출은 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농촌의 부양비를 높인다. 수육 2리의 부양비는 99.5%로서 전국평균 58.1%보다 월등히 높다(〈표 14〉 참조). 따라서 재촌 인구는 그만큼 더 어려운 생활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업노동력의 노령화를 초래하여 농업취업자의 은퇴율 증가와 농업

〈표 14〉 부 양 비 (단위 : %)

구 분	수 옥 2 리	전 국
총 부 양 비	99.5	58.1
유 년 부 양 비	78.8	51.9
노 년 부 양 비	20.7	6.2

주 : 부양비 =  $\frac{(15\text{세 미만 인구수} + 65\text{세 이상 인구수})}{(15\sim 65\text{세 미만 인구수})}$

자료 : 전국의 경우는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4.

노동력 감소의 촉진을 예고한다. 예컨대 재촌지주 10호 중 5호는 노부부만 거주하고 자녀들은 모두 유출하고 있을 정도이다.

세째, 농촌의 중견지도층의 감소와 영농후계자 양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촌에 남아 있는 청년은 없고, 다만 봄이 좋지 않거나 취직을 기다리는 상태 등일 뿐이다. 이장과 반장을 할 사람도 적어서 같은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네째,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함께 여성화를 야기시켜 농업노동력의 열악화를 초래하고 있다(倉持私雄, 1984:23-24; 최양부 외, 1983:128-31). 예컨대 농업노동자는 전원이 여성일 정도이다. 또 노동력의 열악화는 영농 신기술보급이나 기계화에 요구되는 인적 자원의 결핍을 야기시켜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

그런데 노동력의 열악화가 기계화의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은 임금을 상대적으로 상승시킨다. 또 임금 상승은 노동력 부족과 함께 농업기계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현재의 기계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계화에의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결국 기계화 의존도의 상승은 빈농과 농업노동자의 피용농업수입을 감소시켜 이들의 겹업과 탈농을 촉진하고 있다. 즉 하강분해를 촉진시켜 농촌의 계급구성에 변화를 초래한다.

## 2) 동원유형

수옥 2 리에서 농업노동력의 동원유형은 현재 기본적으로 가족노동·품앗이·일고의 세 형태만 존재하고 있다.

### 가) 가족노동

가족노동은 모든 계급에 있어서 농가 노동력 동원의 기본형태이다. 그간 노동력 유출에 따른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와, 농기계·화학비료·농약 등

의 사용에 따른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고용노동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노동의 상대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이다.

가족노동에서 기간노동력은 가구주 부부 2인의 노동력이다. 결손가족의 경우에는 1인일 때도 있지만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인일 경우는 미혼가구원이 일시 귀환하거나 유출 대기상태일 때 단기간 도와주는 것이지 결코 기간노동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조옥라, 1982:207). 따라서 기간노동력에 과해지는 노동량은 지나칠 때가 많다. 특히 여성의 경우, 농번기에는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식사준비·세탁까지 마쳐놓고 남편과 같이 농업노동을 한다. 즉 농업노동 외에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농번기에는 때때로 유출가구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 가족일 경우에는 휴일에 몇 번 도와주기도 하고, 단신유출 가구원도 틈을 내어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품앗이

품앗이는 유일하게 잔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노동조직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노동조직이 부재하는 현재, 농번기에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노동력 교환을 위한 개방적 조직인 바, 임시적이고 비강제적인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품앗이에서는 노동의 등량(等量) 교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작업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일수 계산을 하여 결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상이한 종류의 작업이나 나락, 현금 등으로도 청산을 한다. 예컨대 유○필씨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계화를 바탕으로 기계와 일손을 품앗이 한다. 그리고 그 즉시가 아니라 후일에 품으로써 결산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품앗이가 공동체적인 상호부조적 성격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컨대 부락규모가 작은 하방에서는, 노동능력이 뒤페어지는 노인들도 품앗이에 참여하며 동등한 노동교환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적 성격이 이익추구적인 것으로 바뀌는 단면도 보인다. 부락 규모가 큰 수작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래서 “늙었기 때문에 품앗이를 하자고 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없이 삼촌에게 의존”하는 농가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급부상에서의 등가 노동교환의 원칙과 임의적인 노동력 교환의 특성 때문에, 공동노동 일반에 특유한 이해관계의 대립성과 속박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鄭英一, 1979:8)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

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내기에서의 품앗이는 보통 5~10명이 한 조가 되어 이루어지는데 이 중 남성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준비관계를 맡아 보고 여성들이 주작업을 하고 있다.

또 품앗이는 중농과 빈농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부농은 부족한 노동력을 주로 일고 고용으로써 해결하지만,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중농과 빈농은 품앗이로써 노동력을 확보하여 자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 다) 일 고

고용노동으로서는 임시고인 일고(통상 삽군, 놉, 품군 등으로 불리운다)만 존재한다. 그래서 고용노동의 절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일고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것도 품앗이처럼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일고의 동원은 기본적으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진다. 빈농과 농업노동자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부농과 중농의 일부분이 수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과잉 노동력을 보유한 전자에게는 현금소득의 기회를 주고, 노동력이 부족한 후자에게는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 이해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마을 주민들끼리의 친분·인정이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익추구적 성격이 업존하고 있다. 예컨대 농기계가 도입되고부터는 보다 기계화가 진척된 이웃마을에 의뢰하여 기계작업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주로 기계작업이 불가능한 곳에 품을 팔게 되며 피용농업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일고의 조건은 마을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농번기의 일당이 남성은 5,000~6,000원, 여성은 4,000~5,000원이다. 밭을 매거나 덜 바쁠 때는 여성이 3,000원이고 남성의 일고는 거의 없다. 다만 산판 등에서 4,000 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창 일손이 부족하고 바쁠 때는 남녀간 구별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농업노동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작업시에는 식사 및 담배·술을 제공받는다.

일고의 동원은 떨기<sup>(22)</sup> 수확철이 되면 마을 내의 노동력만으로는 절대수

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마을이나 광주에서도 한다. 그러나 이웃마을도 일손이 달릴 시기여서 주로 광주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 조달은 농가별로, 친척 혹은 광주에 기거하는 자녀들의 주인택을 통해서 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주로 50, 60대의 부녀자들이며, 이들 중 원래부터 도시에 거주하던 자도 반가량은 된다. 이들은 수확기인 5월 20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주로 고용되며, 고용주 집에서 숙식 및 일당 4,000~5,000씩을 제공받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과잉노동력이 농촌으로 역류되는 현상은, 농업노동력 유출이 심해지고 도시에 상대적 과잉인구가 형성된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임시고 동원방식이다(倉持私雄, 1984:33-34).

## 2. 생활양식

전통적으로 농민은 소경영적 생산을 위주로 하는 존재였다. 이 성격이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농부(farmer)가 아닌 농민(peasant)으로, 농촌사회(rural society)를 농민사회(peasant society)로 파악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이 상품화폐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 독점자본의 지배를 받게 됨에 따라, 농민과 농민사회의 전통적인 성격이 한편 온존되면서도, 다른 한편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소상품생산의 의의를 염두에 두고, 농민의 생활양식을 생산과 소비·사회적 관계·의식의 세 차원에서 농민총 일반에 공통적인 점과 계급간 상이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가. 생산과 소비

- (22) 딸기농사는 겨울보리농사에 비해 재배노력이 적게 들고, 가격면에서 유리하며, 중간상인의 선수금도 받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수육 2리에서는 보리를 전혀 재배하지 않는 대신 논·밭 220마지기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딸기는 도시상인과 계약재배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82년에는 재배농가가 직접 선수금을 받았으나, 83년에는 상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선수금을 지불하였다. 재배딸기를 양도하게 되면 선수금에 대한 이자가 있으나, 딸기재배가 부실하여 갚지 못하게 되면 농협에 일반대출의 금리를 지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84년에는 이나마 선수금마저 없애 버려(계약체결을 상인들이 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매가 될 것인가 미지수여서 현재 굉장히 불안한 입장에 있다. 전량 수출이 되는 시장의 제한을 이용하여 도시상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재배를 하여 생산량을 확보하였다가, 재배면적이 증가하자 계약재배 방식을 없애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딸기재배 농가는 도시상인자본에 간접고용된 고용노동의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즉 농민들은 임노동자의 성격도 공유하는 셈이다.

생 산 의 차 원 에서는 기본적 으로 가족 노작 적인 소득 원리 가 작용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은, 농업 이 자본 주의 시장 경제 에 편입 되었다는 사실 을 깊이 인식 하고 있어 자신의 경제적 행위 의 결과 를 따져 보면서 꾸준히 경제적 합리성 을 추구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에게 있어서 행위 의 선택 여지 는 극히 좁다. 재배 작물 품종 의 선정 에서부터 판매 에 이르기 까지 국가 의 통제 가 크게 작용 하며 (통일 벼 의 강제 재배 와 추곡 수매 가 및 수매량 의 결정 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도시 상인 자본 의 적접 · 간접 적인 영향 도 받는다 (계 약 재배 나 밭 떼 기는 그 예 이다). 더우기 자급 하면 생산자 재도 사회적 분업 의 진전에 따라, 농기계 · 화학 비료 · 농약 등 도시 산업 부문 에서 구입 해야 할 비 중이 커 가고 있다. 결국 생산비 증가 와 농공간 부등 가교 환 으로 인해 서 (梅川勉 외, 1974:166-67; 박현체 외, 1982:41; 이우재, 1984:39-40), “빚 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자율성 이 저하 하는 가운데에서도 농민 들은 나름대로 최선 의 적응 전략 을 개발 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예컨대 통일 벼 와 일반 벼 의 재배 비율 조정, 상업성 이 높은 작물 재배, 농기계 의 임대차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적응 전략 이 모든 계급 에 반드시 동일 하지는 않다. 예컨대 투기 성이 높은 딸기 재배 에 있어서 상대적 으로 자본 이 풍부한 부농 · 중농 과 그렇지 못한 빈농 · 노동자 의 행위 선택 에는 차이 가 있다. 중농인 김○현 씨 는 83년에 재배 딸기 전부 가 수확 시기 에 죽어 완전히 실패 했음에도 불구하고 84년에 또 다시 재배 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인 이○임 씨 는 소작 하면 밭에 딸기 재배 를 해 오다가, 흉작 이나 가격 하락 시 비용 회수 도 어려울 것 이라고 판단 하여, 그 경 우 “없는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소작 을 포기 하 였다.”

소비 의 측면 에서도 생 산과 소비 가 미분화 된 성격 이 잔존 하고 있음 이 드러 난다. 농민 은 상품 생 산과 자급 생 산 을 병행 하기 때문에 의식주 비용, 특히 식비 와 주거비 는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 지출 이 필요한 부분 의 경우 에는 사정 이 다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교육비 와 의료비 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 의 일반적인 교육 열과 마찬가지로 이들 도 모두 교육 이 최상의 상승 이동 통로 이며, 자녀들 에게도 토지 · 가옥 등 의 재산 상속 보다 도 교육 을 통한 ‘(생활) 능력’ 을 길러 줄이 더욱 중요 하다고 생각 한다 (김춘동, 1983b: 171). 그러나 이러한 생각 을 실행 하는 데에는 계급 간에 차이 가 날뿐 만 아니라

라(IV장 1절 단신유출 논의 참조)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큰 격차가 있다.

교육비 다음으로 현금지출 규모가 큰 것은 의료비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고 큰 병에 걸렸을 때만 의료기관을 찾기 때문에 의료비는 항상 몫돈으로 필요하게 된다. 더욱기 농업기계화 시도 후 농기계 사고와 농약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환자가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이처럼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의외로, 그 환자가 기간노동력일 때는 노동력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인지 현재 지병환자가 있는 농가는 전부 빈농하층 이하이다.

이와 같이 농업과 농촌이 상품화폐경제에 편입됨에 따라 생산수단의 구입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현금지출의 요구가 증대한다. 그래서 농업생산물만으로 현금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는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보충한다. 물론 하층일수록 노동력의 상품화율이 높게 나타나며, 출가노동은 그 한 예가된다.

#### 나. 사회적 관계

농업이 상품경제에 편입됨에 따라 비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대신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사회적 관계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사회적 관계가 나름대로 기능·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반상관계(班常關係), 즉 신분관계는 더 이상 실질적인 사회관계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각성받아 마을이기 때문에 친족조직의 존재도 눈에 띄지는 않는다. 친족관계는 부모·형제관계가 중심이 될 뿐이며, 이것마저 분가 후에는 가계가 엄격히 분리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집단 대신에 경제적인 계급관계가 일상생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연령·성별에 따른 세대(世代) 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협력·대화·놀이 등이 이루어진다. 이들이 바로 이웃이고 친구이며, 부모·형제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망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얹힌 쟁점에서는 계급 차이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예컨대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층과 하층간의 알력은 심하다. “‘없는 자들’이 일을 추진하면 ‘있는 자들’은 누진적인 비용부담 원칙을 비난하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일을 추진하면 ‘없는 자들’이 심기가 상해서 반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주의 의식의 성장과 함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보

다 오히려 더욱 협조가 안되고 갈등이 심하며, 마을단위의 공동사업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반상관계나 친족조직의 의미가 약한듯, 남미나 남유럽의 경우와 같은 후원자—종속자(patron-client)의 수직적 쌍대적(dyadic)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을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수평적 쌍대적 관계가 중심이 되며 (Wolf, 1978:148-72), 모든 농민들은 개인으로서 의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 단지 이○윤씨가 건설업자와의 연락관계를 맡아보는 것 외에는, 국가공공기관과의 사이에 대리인(agent)이 존재할 뿐이다. 이장은 말단행정기관의 대표적인 대리인인 바 정책지시사항·각종 요금수납·통계조사 등을 수행하며, 마을 의부와의 행정적인 일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심지어 사적인 일까지도 그가 중재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주요안건은 마을주민들의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 여기에서 각 가구주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열띤 논의를 벌인다. 논의 중에는 존대보다 반(半)존대 혹은 평대가 많이 이루어지며,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층의 입장이 보다 크게 반영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부락규모가 큰 수각에서는 ‘부락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부락 내의 주요안건 결정은 여기에서 논의하는 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부락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인 이장·새마을지도자·반장 외에 주로 중농 이상인 유지 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지급 인사들은 “관공서 출입폐나 하며”(김춘동, 1983a:180) 경제력도 남들보다 크다. 그래서 빈농이나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루트(route)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정보가 전화로 유출되니까”라는식의 위화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유지급들은 국가정책이나 시장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추곡수매시기나 영농자금융자 등에서의 차이가 남은 그 한 예이다. 어쨌든 유지로서의 위신과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공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 같았다.

결사체로서는 각종 영농 및 사회 단체를 들 수 있지만 계(契)만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부락계로서는 촌계(村契)·유친계(有親契)가 있다. 전자는 부락의 단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후자는 부모상(喪)에 대비한 것이다. 개별적인 계로서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나락계와, 친목계·반지계 등 다양하다. 이 중 새로운 것으로는 관광계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농민사회의 ‘일과 놀이’가 통합된 상태로부터, 자본제 하에서 이 둘이 분화되고 농촌외부로의 자본이전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장년 가구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놀이’ 기능의 큰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요컨대 농민들의 사회적 관계는 형식상 개인 대 개인의 수평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그 관계는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적인 농민사회 내의 사회적 관계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상충의 입김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다. 의 식

농민들은 농업이 상품생산을 외면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사고방식에서도 합리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 깊은 시장 경제요인 외에도 대부분의 가구주들이 군복무 및 상당기간 도시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이들이 전통적인 농민의식 일변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T.V. 및 유출자와의 관계를 통한 외부문화와의 간접접촉도 있고, 큰일처리는 광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은 소시민의 가치관까지 보유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보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작위주의 농업은 이제 희망이 없어졌다고 하면서도, 생계유지 경제체제 때문인지 쉽사리 수익성이 높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sup>(23)</sup> 그러다가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경쟁적으로 시도하다가 값을 폭락시키고 서로 피해만 보기도 한다.

이들은 농정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이다. 대표적으로는 추곡수매가 책정이 “생산비와 자신의 인건비가 결우 충족될까 말까 할 정도”라고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말하고 있다. 특히 소값이 폭락한 현재는 정책의 비일관성을 공격하면서, “좌우지간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 수출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

(23) 농민경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생계유지가 기본목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가 보다 많은 이득을 가져올 지 모르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생활근거가 위험해지므로 안전위주의 영농을 선호한다(Scott, 1976).

을 수 없다는 경부측의 입장 천명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농산물 대신 공산 품을 수입하라”고 강변한다. 이와 같이 농산물가격·농협·농산물수입·공산 품과의 교역조건 등 많은 점에서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그 대응자세가 모든 계급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상층일수록 “주어진 한계는 일단 받아들이고 각자가 그 여전 내에서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

농민은 이제 더 이상 농업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따로 배운 것도 없고 자본도 없으므로 땅을 파먹고 살 뿐”이라는 자조적인 의식이 농후하다. 그래서 “자식들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시켜 농사를 짓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에는 역설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컨대 도시인에 대해서, “농민들이 쌀을 도시에 팔지 않으면 도시인들도 배가 고파서 직접 시골로 와 농사를 짓을 것이다”라든가, “농민들도 다른 산업기술자들처럼 농업 ‘기술자’ 들이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독점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농업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은, 그간 한국농업부문에서 발생해 온 주된 사회적 갈등이 농업내 계관계가 문제로 된 것이 아니라, 도농간·농공간 불평등이 생겼기 된 것에서도 파악된다(김진균, 1984:174).

요컨대 농민은 상품화폐경제 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농업을 영위하지만 농업에 대한 사회적 천시, 저농산물 가격 때문에 가능하면 농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 열망은 자녀교육열과 도시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도 표출된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한국사회 계급구성에서 하류계급에 속하고 있다는 인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 V. 맷 음 말

지금까지 농민충분해론의 시작에서 산업화에 따른 농촌주민의 계급구성과

(24) 이러한 교육열이 과거에는 국민학교의 자주적인 설립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삼계고등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으려고 학교당국과 마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골 고등학교여서 학생들의 수준이 낮고 광주에서 문제가 있던 학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기피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어 타교 진학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존재양식의 변화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지에서는 분해의 내적 조건인 경영간 생산성 격차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규정하는 외적 조건은 보다 규정적인 힘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취하면서 농업을 불균등하게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외의존적 독점자본이 기본적으로 공업의 원료·투자재원 및 시장을 해외에서 구하고, 농업에 대해서는 값싼 식량과 저임노동력 제공의 역할만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민층은 상향분해는 제약된 채 하강분해만 지속되고, 농촌은 중농과 빈농 중심의 계급구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분해의 특징은 곧 농업 노동력의 열악화를 초래하고 그 동원유형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더우기 소경영적 생산을 위주로 하던 농업이 독점자본에 지배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물론 농민들은 나름대로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의 재생산 기반마저 거의 와해된 현재 그 적용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하에서, 지배적 계급관계는 농업 내에 한정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농외 독점자본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결국 농민은 하류계급의 하나가 되었으며, 자본에 대하여 산업노동자와 동일한 경제적 기반을 가짐으로써 그들과 공통적인 계급적 이해관계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농업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결과들을 야기한 국가정책과 독점자본의 농업파악방식에 대한 재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농업과 공업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위치설정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농업의 희생 위에서 성장한 독점자본이 자신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완강히 반대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전형적인 경종농업지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또한 체계적인 통시적 연구가 되지 못하여 계급구성과 존재양식의 변화과정을 동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농민들의 생활양식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1984 「한국의 사회지표」.

기독교농민회

1984 “농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민중사.

김병태

1982 「한국농업경제론」, 비봉출판사.

김 완

1984 “한국의 농민층분해에 관한 사례연구,” 박현채 외,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김종덕

1985 “한국농업문제의 분석,” 「사회연구」 1집,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준보

1970 「한국자본주의사연구 Ⅱ」, 일조각.

김진균

1984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사회변동연구 (1)」, 민중사.

김춘동

1983a “대농의 지주화 과정을 통해서 본 현행소작제의 성격,” 「한국문화인류학」,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b “이농이 소농의 재생산구조에 미친 영향,” 「인류학논집」 6집,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김형기

1984 “임금노동자의 내부구성,” 이대근·정운영 편,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박진도

1977 “독점자본주의하의 농민층분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0 “계층분화의 분기점으로서의 중농의 의의에 관한 연구,” 「경상논집」 2권 2호, 충남대학교.

박현채

1981 「한국농업의 구상」, 한길사.

박현채 외

1982 「한국의 농업개발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양희왕

1984 “농가 가계구조를 통해서 본 농민분화에 관한 일연구,” 「인류학논집」 7집.

오명석

1983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민경제의 변화,” 「인류학논집」 6집.

## 윤여덕

1983 「농촌인구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인호

1979 “해방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 이문구

1981 「우리동네」, 민음사.

## 이민진

1985 “한국농촌 노동력의 고용형태의 변화,” 「연세사회학」 6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이영기

1984 “고도 경제성장하의 농민충분해,”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 이우재

1984 「한국농업의 현상과 구조」, 한울.

## 이정환

1983a “증소농의 상대적 증가원인과 농지유동화 전략,” 「농촌경제」 6권 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b “대농의 상대적 감소원인과 새로운 대농층의 형성전망,” 「농촌경제」 6권 4호.

## 장상환

1985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동익

1985 「도시빈민연구」, 아침.

## 정영일

1984 “한국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1985 “한국 자본주의와 농업경제,” 「사상과정책」 봄호, 경향신문사.

## 조옥라

1982 “현대 농민의 경제성,” 「현상과 인식」 6권 1호.

## 최양부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한국산업발전과 농민경제의 실태」.

1984 “80년대 한국농업의 현황과 농업재건의 과제,”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 황한식

1984a “현행 소작제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1984b “자본의 운동과 농민충분해,” 「역사와 사회 2」, 한울.

1985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 石渡貞雄

1955 「農民分解論」, 有斐閣.

1970 「小農經濟學」, 亞紀書房.

## 梅川勉外

- 1974 「農業問題の基礎理論」(신대섭 역, 「농업경제학개론」, 청사, 1983).  
 大川健嗣
- 1974 「出稼ぎの經濟學」, 紀伊國屋書店.  
 倉持和雄
- 1983 “韓國における農村・農家人口の流出,” 「アジア經濟」 XXIV-5.
- 1984 “70年代韓國における農業労働構造の變動,” 「アジア經濟」 XXV-1.  
 佐伯尚美
- 1976 「現代農業と農民」, 東京大學出版會.  
 櫻井浩
- 1978 “韓國經濟における農業の位置,” 「アジア經濟」 XIX-7.  
 鄭英一
- 1979 “韓國農業における雇用労働力および共同労働組織の變化,” 「アジア經濟」 XX-8.  
 美崎皓
- 1979 「現代勞働市場論」, 農山漁村文化協會.  
 林偉史
- 1983 “韓國農業と周邊資本主義的特質,” 「世界經濟評論」.  
 南清彥
- 1961 「農民層の分解と農業政策」, 三一書房.  
 Meillassoux, Claude
- 1981 *Maidens, Meal and Mo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ore, Mick
- 1984 “Agriculture in Taiwan and South Korea: the minimalist state?,” *Bulletin*, Vol. 15, No. 2, IDS, University of Sussex, England.  
 Pearce, R.
- 1983 “Sharecropping: Towards a Marxist View,”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10, No. 2 & 3:42-70.  
 Scott, James
-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Yale University Press.  
 Wolf, Eric R.
- 1966 *Peasant*(박현수 역, 「농민」, 청년사, 1978).